

3. 勤勞者의 住居安定과 목돈마련 支援에 관한 法律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3168號, 1990年 11월 26일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자(주택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의 대출을 받을 경우
4. 근로자의 자가 건물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로 구획되어 건축된 단독주택(1세대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하며 구조

상 수개의 부분으로 구획되어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것에 한한다)을 취득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의 대출을 받을 경우

제2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금이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1호당 또는 1세대당 6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주택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택 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주택자금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주택사업자의 경우 현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업자가 주택자금을 융자받는 경우에만 동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업자가 아닌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중소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에 따르는 자금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영 제24조 제3호).

나. 정부의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단독주택을 취득·개량하는 자에 대하여도 주택자금이 대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신용보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현재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만이 신용보증대상이 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가구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연면적 660제곱미터까지 신용보증대상이 되도록 함(영 제24조 제4호).

다. 주택자금 대출한도가 인상되는데 따라 신용보증도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현재 최고 3천만원까지 자금별로 규정되어 있는 신용보증한도(개인신축 및 구입자금 3천만원, 개인임차 및 개량자금 1천만원, 사업주 및 주택사업자 세대당 1천만원)를 6천만원의 범위안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영 제25조 제3항).